

제339회 임시회
2015. 4. 30.(목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장선배 의원 등 7명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4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5년 4월 14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4월 22일

-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% 이상을 재 적립 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.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.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여

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주요내용

가. 매년 이자의 20%이상 기금 재 적립 조항 삭제(안 제4조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,

- “해촉” 을 “위촉해제” 로 수정(안 제5조)

-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수정(안 제5, 8조)

다. 같은 의미가 반복된 조항 수정(안 제10조)

라.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규정(안 제11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맹정호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,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%이상을 재 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며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임.
-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은 별도 계정에 의해 재해구호사업, 노인 복지 지원사업, 장애인복지 지원사업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,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되고 있음.
- 이자 재 적립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
첫째, 기금의 설치·운용이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에 따른 단체위임사무로 법리적인 문제가 없으며,
둘째, 도민의 기금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,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

의한 이자수익금 감소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의 명시는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 4조에 따른 것으로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년 이내로 정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
2.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
3. 중앙정부의 보조금
4. 기금의 운용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”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, “지출 하되, 기금

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”를 “지출한다”로 하며,
같은 조 제3항 중 “이 기금”을 “기금”으로, “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”을 “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3항 중 “해촉될”을 “위촉 해제될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출납폐쇄후 80일 이내”를 “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”로 하며,
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”를 “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제2호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
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제3호에 따른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
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조제4호에 따른”으로, “있는 자”를 “있는 사람”으로 하고,
같은 항 제3호 중 “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”을 “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
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후

단 중 “세부사항” 을 “사항” 으로 하며,
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3항에 따라” 로, “때에는” 을 “경우” 로 하고,
같은 조 제5항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한다.

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도의 출연금</u> 2. <u>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</u> 3. <u>중앙정부의 보조금</u> 4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 5. <u>기타 수입금</u> 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의 출연금</u> 2. <u>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</u> 3. <u>중앙정부의 보조금</u> 4. <u>기금의 운용수익금</u> 5. <u>그 밖의 수입금</u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생략) 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

<p>제4조(기금의 관리.운용)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<u>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, 제3조의 용도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u></p> <p>② 기금의 사용은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고 <u>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 하되,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2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	<p>제4조(기금의 관리.운용) ① ----- ----- ----- <u>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해당 연도</u>----- ----- <u>지출한다.</u></p> <p>③ <u>기금</u>----- <u>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p>	<p>제5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

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<u>해촉</u>될 수 있다.</p>	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위촉</u> 해제될 -----.</p>
<p>제6조(결산 및 보고) ① <u>도지사</u>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<u>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</u>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</u> 마다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결산 및 보고) 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</u>-----<u>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</u>-----.</p>
<p>제8조(노인복지지원사업) <u>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</u> 노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 <u>각 호와 같다</u>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</p>	<p>제8조(노인복지지원사업) <u>제3조제2호에 따른</u>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</p>
<p>제9조(장애인복지지원사업) <u>제3조</u></p>	<p>제9조(장애인복지지원사업) <u>제3조</u></p>

<p>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⑤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.</p>	<p>----- ----- <u>경우</u>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1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제11조(시행규칙) (생 략)</u></p>	<p><u>제12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재해구호법

제14조(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재산“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3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.

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